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2118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진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정은숙

변론 종결 2023. 11. 8.

판결 선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20. 6. 30. 체결된 8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8,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위 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C 부부의 채권자이다. B은 2023. 2. 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해 493,712,497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B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이 없다. 그런데 B, C 부부의 자녀인 피고는 2020. 6. 30. 8억 원인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당시 28세에 불과한 피고는 스스로 8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위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람은 B이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B이 피고에게 8억 원을 증여하여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8억 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9,800만 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자신의 근로소득 또는 B이 아닌 다른 가족들로부터의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으로 마련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8억 원 중 적어도 1억 3,500만 원은 C이 2021. 4. 27. 피고의 언니인 F에게 증여한 돈 중 일부를 피고가 전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모두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70,000,000원, 직장 대출 등 신용대출금 114,500,000원, 퇴직연금 및 퇴직금 중도인출금 34,884,137원, 본인의 저축 및 주식투자금 130,947,552원, 언니 F으로부터 차용한 135,000,000원,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21,000,000원 등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다.

2. 원고의 2023. 10.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가. 변경 신청의 내용

원고는 2023. 2. 20.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와 B 사이에 2020. 6. 30. 체결된 8억 원의 증여계약'을 9,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9,800만 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소외 F와 소외 C 사이에 2021. 4. 27. 체결된 2억 8,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9,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청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하였다(가액배상청구 부분은 종전과 동일한데,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익자 F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취득한 피고는 전득자로서 원고에게 9,800만 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고의 기존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공통적으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하려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3. 6. 30.경 체결된 8억 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9,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임에 반해,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와 F 사이에 2021. 4. 27.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9,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C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익자 F이 다시 그 중 일부 돈을 전득자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전득자인 피고로부터 가액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양자는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심리 대상이었던 채무자 B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B과 피고 사이의 2020. 6. 30.경 증여계약의 존부, 수익자로서 피고의 악의 여부 등과 별개로, 채무자 C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C과 F 사이의 2021. 4. 27.자 증여계약의 존부, 수익자인 F와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신청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종전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법률관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원고의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 30. G 주식회사가 H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55,000,000원의 보증금액 한도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C은 G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1. 16. H은행에 217,896,36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23. 2. 2. 현재 G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493,712,497원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B으로부터 8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앞서 주장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의 각 출처에 관한 증거로 을 제1 내지 18호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와 B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나경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 불허결정의 불복 방법[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룰 수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위 불허 결정의 이유에 대해 다시 설시한다.